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5년 8월 11일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95. 7. 21

나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95. 7. 26

라. 상정 및 의결

-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
 - 제2차 내무위원회 상정 : 95. 8. 10
 - 제2차 내무위원회 의결 : 95. 8. 10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징수과장 박성준)

가. 제안사유

- 직제개편으로 징수과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“세무과장” 다음에 “징수과장” 신설

다. 근거법규

-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2호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본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2호 95. 3. 3에 의거 징수과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제출된 (안)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전원찬성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대장비치)제1항중 “세무과장” 다음에 “징수과장”을 신설한다.

제6(포상금지급신청)제1항중 “세무과장” 다음에 “징수과장”을 신설한다.

[별지 3호서식]중 “세무과장” 다음에 “징수과장”을 신설한다.

[별지 3호서식부표1]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징수과장”으로 한다.

[별지 3호서식부표2]중 “세무과장” 다음에 “징수과장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5조(대장비치) ① 세무과장, <u>(신설)</u>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대장비치) ①<u>징수과장</u>.....</p>
<p>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 세무과장 <u>(신설)</u>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<u>징수과장</u>.....</p>
<p>[별지 제3호 서식] ()월분 징수 포상금 신청서 수신 :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참조 : 세무과장, <u>(신설)</u> (양식 생략)</p>	<p>[별지 제3호 서식] ()월분 징수 포상금 신청서 수신 :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참조 : 세무과장, <u>(징수과장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[별지 제3호서식 부표1]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<u>(세무과장)</u> (양식 생략)</p>	<p>[별지 제3호서식 부표1]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<u>(징수과장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[별지 제3호서식 부표2] 숨은세원발굴내역 세무과장, <u>(신설)</u> (양식 생략)</p>	<p>[별지 제3호서식 부표2] 숨은세원발굴내역 세무과장, <u>(징수과장)</u> (현행과 같음)</p>